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2892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79	민형배의원	2025. 1. 16.	2025. 2. 18.
	8552	전진숙의원	2025. 2. 27.	2025. 8. 18.
	8587	이수진의원	2025. 2. 28.	2025. 8. 18.
	8837	한지아의원	2025. 3. 12.	2025. 8. 18.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8.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비용추계생략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를 명시하고,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u>치료</u>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u><신설></u> ② ~ ⑥ (생략) <u><신설></u>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u>----- ----- 3. <u>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u>

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
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
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
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
력·시설 등을 갖추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
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

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
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
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